

의안번호

제714호

- 울산광역시중구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09. 9. 2(수) ·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09. 9. 7(월)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09. 9. 17(목)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문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명 낫표(「 」) 적용(안 제1조)

- 도로법 ⇒ 「도로법」

나. 인용 법령조문 변경(안 제1조)

- 제31조 및 제64조 ⇒ 제31조 및 제76조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개정

(안 제1조 ~ 제3조)

4. 근거법규 : 「도로법」 제31조, 제76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

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 본 조례 제1조(목적)의 인용 법령인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가 도로법 “제31조 및 제76조”로 변경됨에 따른 상위법 인용법령을 개정하는 사항과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도로법(보도구역관련 조문)

제31조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 (원인자 부담금)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